유해·위험방지계획서 안전보건관리계획

이번호부터는산업안전보건법제48조(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제출등) 중안전보건관리계획에대해항목별기준과간략한작성예를소개하고자한다.

1.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계획서

- 가.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6호 서식 에의한작성
- ①발주자 및 공사 종류를 기재한다.
- ②공사금액은 재료비, 관급재료비, 직접노무비, 기 타금액을 구분하여기재한다.
- ③안전관리비계상대상금액에공시종류및규모에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한다.단,관급재료비를 포함한 안전관리비는관급재료비를 포함하지 않았을 때의 안전관리비의 1.2 배를초과할수없다.

<표 1> 공사 종류 및 규모별 안전관리비 계상기 준표

대상액	5억원 5	억원이상 50억원미만		50억원
공사종류	미만	비율♡	기초액(0)	이상
일반건설공사(갑)	2.48(%)	1.81(%)	3,294천원	1.88(%)
일반건설공사(을)	2.66(%)	1.95(%)	3,498천원	2.02(%)
중건설공사	3.18(%)	2.15(%)	5,148천원	2.26(%)
철도·궤도신설공사	2.33(%)	1.49(%)	4,211천원	1.58(%)
특수및기타건설공사	1.24(%)	0.91(%)	1,647천원	0.94(%)

④안전관리비 대상액이 구분되어 있지 아니한 공사는 도급계약 또는 자체사업계획상의 총 공사금액의 70%를 안전관리비 계상 대상금액으로하여 공사종류 및 규모에 따른 요율을 곱하여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산정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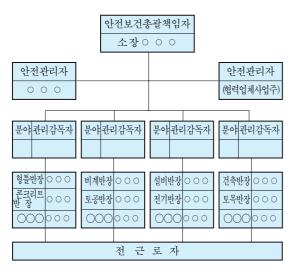
⑤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세부항목, 단위, 수량, 금액, 산출내역 등을 정확히 파악하여 각항목별비용을 산출하고 산출한비용은 각항목별사용기준비율에 맞추어 조정한 후 항목별실행계획 및 세부사용계획을 작성한다

2. 안전관리 쪼직표 · 안전보건교육계획

가.안전관리조직표

산업안전보건법 규정에 적합한 안전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조직표를 작성한다.

- (1) 안전보건총괄책임자, 안전관리자, 관리감독자 등기급적 현장의 직원,근로자 등이 모두 포함될 수있 도록 안전관리 조직을 구성하고, 구성원에게 책임을 부여한다.
 - ①안전보건총괄책임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3조 관련사항
 - ②안전관리자: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3조 관 력사항
 - ③관리감독자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10조 관 력사항
- ② 각 협력업체 대표로 협의체를 구성하여 조직표 를 작성하고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수시로 변경 하여 현황을 유지한다.



<그림 1> 안전관리쪼직표 예시

나.안전보건교육계획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정기교육(근로자,관리감독자 구분)과 신규 채용시교 육,작업내용변경시교육,특별안전·보건교육 등 교육 대상,교육시간 및 목적에 적합한 교육계획(교육대상 별 교육일시,장소,시간,교육내용 등)을 수립·작성한 다.

◀ 안정보건교육계획 예시 ▶

가.교육목적

- (1) 교육을 통한 근로자의 사고예방 능력 향상 및 안 전의식고취
 - ②미연에사고를방지함:소중한생명보호
 - (3) 무재해 현장 달성

나.교육계획

- (1) 년 월간 단위로작성
- ②교육종류 강사 시간 대상 장소등의 내용포함
- ③ 공종별 대상별로구분하여작성
- 4) 직원 및 근로자에게 회람 및 공지

⑤ 강사는계획에근거하여 교육을실시(교안준비)

다.교육방법

- ① 전원참가원칙및사전교육시간전파
- ② 교육수강확인서명및 교육진행모습시진촬영
- ③ 사전 교악준비로 공종 대상에 맞는 교육진행
- 4) 시청각 토론 체험식 교육방법 적극활용
- ⑤ 강사는직원 및 외부강사 활용
- ⑥ 근로자의 참석동기 유발
- (7) 사고사례 전파로 동종재해예방효과 고취
- 8) 근로자의 적극적인 교육참여 유도

라.교육의 종류 및 세부사항

구분	교육기준	근거
정기 교육	전기교육 관리감독자 근로자 • 현장소속관리감독자 • 현장소속전근로자 • 반기 8시간이상 또는 • 매월 2시간이상 연간 16시간이상	법제31조 규칙제33조
수 译 可	정기교육 투변이 자료	법제31조 폐 작하다 강내부에

있어서 행하는작업에 한하다)

- ②밀폐된장소(탱크내또는환기가극히불량한좁은 장소를말한다)에서 행하는용접작업또는습한장 소에서 행하는전기용접작업
- ③폭발성·발화성 및 인화성 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한 취급작업을 제외한다)
- ④목재가공용 기계(둥근톱 기계·띠톱 기계·대 패기계·모떼기기계 및 루타에 한하며 휴대용을 제외한다)를 5대이상 보유한 사업장에서의 당해

건설과련실무

기계에의하작업

- (5)1톤이상의크레인을사용하는작업또는1톤이하 의 크레인 또는 호이스트를 5대 이상 보유한 사업 장에서의당해기계에의한작업
- ⑥건설용리프트·곤도라를이용한작업
- (7)전압이 75볼트이상인 정전 및 활선작업
- (8)콘크리트파쇄기를 사용하여 행하는 파쇄작업(2미 터이상인구축물의파쇄작업에 한한다)
- ⑨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지반 굴착 (터널 및 수직갱외의 갱굴착을 제외한다)작업
- ⑩흙막이 지보공의 보강 또는 동바리의 설치 또는 해체작업
- (11)터널안에서의 굴착작업(굴착용 기계를 사용하 여 행하는 굴착작업 중 근로자가 칼날 밑에 접근 하지 아니하고 행하는 작업을 제외한다) 또는 동 작업에 있어서의 터널 거푸집 지보공의 조립 또 는콘크리트작업
- (12) 굴착면의 높이가 2미터 이상이 되는 암석의 굴착 작업
- (13)거푸집지보공의조립또는해체작업
- (14)비계의조립·해체또는변경작업
- (15)건축물의 골조·교량의 상부구조 또는 탑의 금속 제의 부재에 의하여 구성되는 것(5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조립·해체 또는 변경작업
- (16)처마 높이가 5미터 이상인 목조건축물의 구조부 재의 조립이나 건축물의 지붕 또는 외벽 밑에서 의설치작업
- (17)콘크리트 공작물(그 높이가 2미터 이상인 것에 한한다)의 해체 또는 파괴작업
- (18) 맨홀작업
- (19)산소결핍장소에 있어서의 작업
- 20 유기용제 또는 특정화학물질의 제조 또는 취급 작업(시험연구를 위하여 취급하는 작업을 제외 하다)

마.교육내용

항 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비고
정기안전 교 육	1. 법적 안전교육 내용 2 추락 및 낙하물 사고 예방교육 3. 화재예방 교육 4. 기타 현장 안전관리에 필요한 내용	월 2시간 이상	
특별안전 교 육	1. 법적 유해위험공종 작업전실시 2 해당 유해위험공종에 맞는 내용 교육 3. 추락, 낙하, 감전 등 재래형 재해예방 교육 4. 작업투입전 TBM실시 요령 등을 교육	작업 투입전 2시간 이상	공사 담당자
관리감독자 교 육	1. 현장소(반)장을 위주로한 집합교육 2 법적 관리감독자 직무수행에 필요한 내용 3. 안전보건 개선방법 4. 점검,지도,환경 관리 사항 5. 사고 사례 전파 및 동종재해 방지대책 토론	월 2시간 이상	반장급 이상 관리 감독자
신 규 채용자 교 육	1. 현장개요설명 및 신원확인 2. 서약서 작성 및 혈압측정, 보호구지급 3. 보호구의 착용요령 등 중요성 전달 4. 현장의 안전관리 방침 등을 전달 5. 재해상황 발생시 대피요령 등을 전달 6. 작업시 안전수칙 설명 7. 화재예방 교육 8. 10대 안전수칙설명 9. 교육용 궤도활용	채용시 1시간 이상	 · 담당기사 가교육 · 고령자및 질병자확인 · 신원확인 · 교육후 신검실시 독려

항 목	교육내용	교육 시간	비고
기 타 안전교육 및 행사	1. 안전조회시 안전교육 2 매월 안전점검의 날 행사 -행사시 우수근로자, 업체 포상 -행사후 현장 합동 안전점검 실시 3. 소방 안전교육 :반기1회 소방 안전교육 실시 4. 공종별 수시교육 5. 작업내용 변경시 안전교육 6. 재해예방토론회 실시 -재해사례 위주로 동종재해 방지대책 토론 7. 기타, 안전캠페인 등 근로자의 안전의식 고취용 교육 및 행사	계획에 의거	· 현장소장 · 안전관리자 · 공사담당자

3. 개인보호구 지급 계획

근로자의 직종,보호구의 종류,지급수량,지급시기 등 전체 공정표에 따라 보호구의 지급계획을 산업안 전보건법 시행규칙 별지 제47호 서식에 맞게 작성한 다.

◀개인보호구지급계획서 작성(건축공사)예 ▶

직종	보호구명	지급수량	지급시기
가설공	안전 모 안전 대 안 전 화 신호수용 반사조끼	30 30 30 10	2002. 9
토 공	안전 모 안전 화 신호수용 반사조끼	30 30 10	2002. 9
철근콘크리트공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90 90 90	2002. 9
용접공	안전 모 안전장갑 안 전 화 용접용 토시 용접용 앞치마 보 안 면 보 안 경	50 50 50 50 50 50 50	2002. 9

직종	보호구명	지급수량	지급시기
복 공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100 100 100	2002. 9
미장공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50 50 50	2002. 9
조 적 공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50 50 50	2003. 7
배 관 공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안전장갑 방진마스크	30 30 30 30 30	2002. 9
방수공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송기마스크	20 20 20 20 20	
도 장 공	안전모 안전화 안전대 송기마스크	30 30 30 30	2002. 9
철거공	안전모 안전대 안전화 송기마스크 신호수용반사조끼	20 20 20 20 20 10	

4. 재해발생 위험시 연락 및 대피방법

가.비상연락망

비상사태 발생에 대비한 관계기관(소방서, 경찰서, 노동부, 도시가스 · 전기 · 통신 등 지하매설물 관계 기관, 응급병원 등 과의 비상연락망 구축

- 나.비상경보체계
- (1) 긴급재해발생등비상시경보발령계획 (각상황별경보발신방법,발령지점등)
- ②설치된경보시설에대한작동및점검계획

건설관련실무

- 다.긴급대피및피난유도계획
- ① 긴급대피방법(유도원의 배치, 유도시설설치등)
- ② 현장 또는 인근의 대피시설 확보 및 대피로의 지 정

◀비상시 긴급조치 계획 작성 예 ▶

- 1-1. 재해위험 발견시 연락 체제
- 1-1-1. 급박한 재해발생 위험요인을 발견한 자는 지 체없이 인근 작업자에게 경보하여 안전한 곳 으로 대피하게 하고,소속 상위자,안전관계자 및관리감독자에게이를알린다.
- 1-1-2 급박한 재해발생의 요인을 접한 작업 및 안 전관계자는 즉시 위험상황을 장내 방송 무 전연락, 호루라기 등의 경보방법을 통하여 해당 근로자 및 전 근로자, 관계장에게 전파 하여 안전한 장소로 대피하게하고 필요한 조치를조직적으로취한다.
- 1-1-3 재해발생위험 상황이 각 작업 영역간에 서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는 각 작업 영역의 관계자 간에 협조와 충분한 검토를 통한 예방 조치가뒤따라야 한다.
- 1-2 재해위험 발격시 대피요령
- 1-2-1.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해당 근로 자는 관계자의 지휘에 따라 안전한 장소로 즉 시대피하여야하다.
- 1-22 재해발생의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 작업 및 안 전관계자는 해당 근로자가 안전한 장소로 대 피할 수 있도록 신속하고 조직적으로 대처한 다
- 13 재해발생시 행동 요령
- 131. 현장에서 재해를 목격한 근로자는 즉시 근처

- 관리자 및 근로자에게 전파
- 132 관리자는 무전기를 이용 사무실과 경비실에 즉시전달
- 133. 사무실은 구내 방송으로 재해 상황을 전파하 여대피할수있도록조치
- 134 현장에 있는 근로자는 직원 등 관리자의 통제 하에 대피
- 1-4. 각종 재해발생시조치
- 141. 현장에서 1차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구급도구 등을사용하여환자를안전한곳으로이송
- 1-42 대형사고 발생시 인원을 집중 투입하여 재해 상황의 확산 방지에 주력
- 143 공사과장은 현장소장의 지시를 받아 직원 및 현장 인원을 지휘하여 현장상황 조치 및 2차 재해 예방에 주력
- 144 차량 등 제반 도구를 신속하게 운영하여 응급 조치에최선을다함
- 145 폭발이나 화재발생시 즉시 소화장비를 이용 해서진화
- 146 현장에서의 조치가 불가능할 경우에는 관계 부처에 협조를 강구
- 1-4-7. 기타사항
- 15. 경보시설의 점검계획
- 1-5-1. 점검표에 의한 안전검검 실시(화재발생 위험 장소 위험물취급장소 감전사고위험장소등)
- 152 매월 안전검검의 날을 통해 점검 실시
- 153 점검 및 검사를 실사한 경우에는 결과를 반드 시기록・유지
- 154 점검결과를 공사 종료시까지 보존
- 16. 비상체제 교육및 훈련

- 161. 교육은 안전 · 환경교육과 병행하여 정기적 으로실시
- 162 훈련은계획에의거실시
- 163. 훈련내용:재해예방방법,화재시진압방법,소 방장구사용법,환자이송방법,복구요령등전 방적인사항
- 164. 각종장구의사용방법주지
- 165. 화재.폭발등위험물취급에관한사항전파
- 166. 재해발생시의 임무및 행동요령주지
- 167. 기타 재해상황 발생시 연락 및 대피방법 등 교육

1-7. 비상연락체계

- 1-7-1. 건설공사비상상태의 범위
- (I) 붕괴,폭발가스누출등에의한작업자 · 시설물및인 근지역에악영향의우려가있는경우
- ②호우.강풍등의 천재지변
- ③ 인근지역에서 발생한 비상사태가 현장에 파급효 과의 우려가 있는 경우
- ④기타 인명 및 시설물에 치명적인 영향이 우려되 는경우
- 1-72 내부비상역락망
- (I) 건설공사 현장의 보고계통에 따라 다음의 긴급 연락망을 명확히 구성한다.
- ①발주자또는인·허가기관등의담당자연락처
- ②시공자 감리자의 현장 상주자 및 본사 연락처
- ③ 현장상주자출타시연락방법등
- 1-7-3. 외부비상연락망

